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94
----------	-------

발의연월일 : 2026. 7. 2

발 의 자 : 박성훈 · 임이자 · 조은희
김장겸 · 최보운 · 조지연
김은혜 · 박수영 · 김성원
박충권 · 송언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또는 저율과세를 적용하며,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업 노동력 부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합원의 소득을 증대하고 어업용 토지 및 현물출자를 유도하여 법인의 규모화와 자본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귀어 등 젊은 인력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67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3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